|  |  |  |
| --- | --- | --- |
|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양도관리**  **잠행방법**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령 2011년 제1호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양도관리 잠행방법》은 2011년 8월 2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업무회에서 심의통과 된 바, 이에 공포하며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오정부(吴定富)  2011년 8월 26일  **제1조**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양도행위를 규범화하고, 보험계약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보험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보감회’)는 법률에 따라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양도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제3조** 보험회사가 보험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경우, 반드시 중국 보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전 항에서 칭한 “일부 보험업무”에 대한 표준은 중국 보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4조** 보험회사가 보험업무를 양도할 경우, 반드시 자원(自愿),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보험회사가 보험업무를 양도할 경우, 양도과정 중 지득한 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보험 계약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보험업무를 양도할 경우 쌍방은 반드시 평등한 협상을 기초로 보험업무 양도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7조** 보험업무를 양도받은 보험회사는 반드시 양도측 보험회사의 원(原)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인, 피보험인과 수익인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 보험업무의 양수측 보험회사는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양도받은 보험업무는 양수측의 업무범위 내여야 한다.  (2) 회사의 관리구조를 완벽히 하고, 내부 통제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3) 상환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보험업무를 양도받은 후, 상환능력은 중국 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최근 2년 내 금융감독관리기구로부터 중대한 행정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5) 양도받은 업무의 보험증서의 최초 서명 발급지에 분지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이미 진행한 경영관리를 양도받은 업무의 사업타당성 연구.  (7)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9조** 보험 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은 반드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전문 중개기구를 초빙해야 하며, 양도한 보험업무의 가치, 합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보험 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은 반드시 중국 보감회의 유관규정에 따라 양도업무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완전과 합리를 확보해야 한다.  **제11조** 보험회사가 보험업무를 양도 또는 양도를 받을 경우, 반드시 동사회 또는 주주회의, 주주총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보험업무를 전부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회의, 주주총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보험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은 반드시 중국 보감회에 아래 자료를 1식 3부씩 제출해야 한다.  (1) 보험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의 기본 상황  (2) 보험업무 양도 협의  (3) 보험업무 양도 절차 안배  (4) 경영관리를 양도받은 보험업무의 가행성 방안  (5) 전문 중개기구의 평가보고서  (6) 양도 업무의 책임준비금 평가보고서  (7) 양도받은 보험회사측의 상반기 상환능력 보고서 및 상환능력 영향 분석보고서  (8) 보험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의 동사회 또는 주주회의, 주주총회가 보험업무 양도를 협의한 문건  (9)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그 중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는 쌍방의 공동 서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13조** 중국 보감회로부터 보험업무 양도 비준을 받은 후 양도측의 보험회사는 즉시 관련 보험계약자, 피보험인에게 양도받은 보험회사의 기본정보, 양도방안 개요 및 책임부담 등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관련 보험계약인, 피보험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생명보험을 계약한 피보험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양도측 보험회사는 반드시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보험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은 반드시 업무 양도방안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업무 양도 관련사항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중국 보감회로부터 보험업무 양도 비준을 받은 후 보험업무를 양도하는 쌍방은 중국 보감회가 지정한 신문에 공동으로 공고해야 하며, 공고 차수는 3회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를 진행해야 하며 공고 기한은 1개월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15조** 보험회사가 법률에 따라 보험업무 전부를 양도하여 그 업무활동을 마칠 경우, 반드시 양도 협의 이행 완료일로부터 5일 업무일 내에 중국 보감회에 보험허가증 취소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업무를 부분적으로 양도하고 보험허가증과 관련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양도 협의 이행 완료일로부터 15일 업무일 내에 중국 보감회의 유관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처리한다.  **제16조** 보험회사가 본 방법을 위반하고 보험업무 양도를 진행할 경우, 중국 보감회는 기한에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17조**《보험법》 제28조 규정의 재보험(再保险), 제92조, 제139조 규정의 보험업무 양도는 본 방법에 적용하지 않는다.  보헙회사가 보험업무를 양도할 경우, 《보험법》 제89조 제2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중국 보감회가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본 방법은 중국 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保险公司保险业务转让管理 暂行办法**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令2011年第1号    　　《保险公司保险业务转让管理暂行办法》已经2011年8月22日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主席办公会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10月1日起施行。  　　　　　　　　　　　　　　　　　　　　　　　　　　　 主席 吴定富　　　　　　　　　　　　　　　　　　　　　　　　　　 二〇一一年八月二十六日    **第一条** 为了规范保险公司保险业务转让行为，保护投保人、被保险人和受益人的合法权益，维护保险市场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以下简称《保险法》），制定本办法。  **第二条**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中国保监会）根据法律和国务院授权，对保险公司保险业务转让行为实施监督管理。  **第三条** 保险公司转让全部或者部分保险业务，应当经中国保监会批准。  　　前款所称的“部分保险业务”的标准，由中国保监会另行规定。  **第四条** 保险公司转让保险业务，应当遵循自愿、公开、公平、公正的原则。  **第五条** 保险公司转让保险业务，不得泄露在此过程中获悉的商业秘密和个人隐私，不得损害投保人、被保险人和受益人的合法权益。  **第六条** 保险业务转让双方应当在平等协商基础上订立保险业务转让协议。  **第七条** 保险业务受让方保险公司应当承担转让方保险公司依照原保险合同对投保人、被保险人和受益人负有的义务。  **第八条** 保险业务受让方保险公司应当符合下列条件：  　　（一）受让的保险业务在其业务范围之内；  　　（二）公司治理结构完善，内控制度健全；  　　（三）偿付能力充足，且受让保险业务后，其偿付能力符合中国保监会的相关规定；  　　（四）最近2年内无受金融监管机构重大行政处罚的记录；  　　（五）在受让业务的保单最初签发地设有分支机构；  　　（六）已进行经营管理受让业务的可行性研究；  　　（七）中国保监会规定的其他条件。  **第九条** 保险业务转让双方应当聘请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等专业中介机构，对转让的保险业务的价值、合规性等方面进行评估。  **第十条** 保险业务转让双方应当按照中国保监会的有关规定，对转让业务的责任准备金进行评估，确保充分、合理。  **第十一条** 保险公司转让或者受让保险业务，应当经董事会或者股东会、股东大会批准；转让全部保险业务的，应当经股东会、股东大会批准。  **第十二条** 保险业务转让双方应当向中国保监会提交下列材料一式三份：  　　（一）保险业务转让双方的基本情况；  　　（二）保险业务转让协议；  　　（三）保险业务转让程序安排；  　　（四）经营管理受让保险业务的可行性方案；  　　（五）专业中介机构的评估报告；  　　（六）转让业务的责任准备金评估报告；  　　（七）受让方保险公司上一年度偿付能力报告和受让业务对受让方保险公司偿付能力影响的分析报告；  　　（八）保险业务转让双方的董事会或者股东会、股东大会作出的批准保险业务转让协议的文件；  　　（九）中国保监会规定提交的其他材料。  　　其中，第（三）项、第（五）项和第（六）项须双方共同签字确认。  **第十三条** 中国保监会批准保险业务转让后，转让方保险公司应当及时将受让方保险公司基本信息、转让方案概要及责任承担等相关事宜书面告知相关投保人、被保险人，并征得相关投保人、被保险人的同意；人身保险合同的被保险人死亡的，转让方保险公司应当书面告知受益人并征得其同意。  　 保险业务转让双方应当合理实施业务转让方案，妥善处置业务转让相关事宜。  **第十四条** 中国保监会批准保险业务转让后，保险业务转让双方应当在中国保监会指定的报纸上联合公告，公告次数不得少于三次，同时在各自的互联网网站进行公告，公告期不得少于一个月。  **第十五条** 保险公司转让全部保险业务，依法终止其业务活动的，应当在转让协议履行完毕之日起十五个工作日内向中国保监会办理保险许可证注销手续，并向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相关手续。  　　保险公司转让部分保险业务，涉及保险许可证事项变更的，应当在转让协议履行完毕之日起十五个工作日内，按照中国保监会的有关规定办理变更手续。  **第十六条** 保险公司违反本办法进行保险业务转让的，由中国保监会责令其限期改正，并依法进行处罚。  **第十七条** 《保险法》第二十八条规定的再保险、第九十二条、第一百三十九条规定的保险业务转让，不适用本办法。  　　保险公司转让保险业务，不得违反《保险法》第八十九条第二款的规定。  **第十八条** 中国保监会对保险公司保险业务转让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九条** 本办法由中国保监会负责解释。  **第二十条** 本办法自2011年10月1日起施行。 |